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유산의 등재 준비를 위한 지침원칙의 의의와 한계

허수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 전문관

hsujin2016@gmail.com

국 문 초 록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어두운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이러한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가 불러올 수 있는 추가적인 불편함이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검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약가입국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해졌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유산의 성격과 등재기준,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유산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제시하여, 갈등기억유산 등재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지침원칙은 갈등기억유산이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유산 해석에 대한 전략을 처음으로 서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유산 등재 절차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한 10가지 등재기준 중 같은 어두운 역사, 기억과 관련된 기준인 등재기준 (vi)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는 등재 신청국의 의도에 따라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침원칙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갈등기억유산 등재신청서에 해석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없어 등재신청국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갈등기억유산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물리적 장소와 연결되어 보호하고 기억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지만, 점차 화해와 치유의 장소로 그 역할을 확장해왔다.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화해와 치유의 장소이자, 갈등에서 비롯한 사회 구조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이 된 갈등기억유산은 화해와 치유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세계유산, 갈등기억유산, 불편문화유산, 유산해석, 갈등관리

투고일자 2024. 6. 11. | **심사일자** 2024. 7. 18. | **개재확정일자** 2024. 8. 7.



I. 서론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그해 벨기에와 프랑스가 초국경유산(Transboundary World Heritage)으로 등재를 신청한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 및 기념 장소 (서부 전선) (Funerary and memory sites of the First World War (Western Front))’의 등재신청서 검토를 중단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2020년까지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들의 세계유산 등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에 해당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다시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의 채택 이후 전 세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진 유산을 등재해 온 세계유산목록을 살펴보면 전쟁이나 갈등과 관련된 유산을 종종 찾을 수 있다. 1979년 등재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40~1945) (Auschwitz Birkenau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1940~1945))’나 1986년 등재된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돔) (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이 그 예이다. 등재 신청서 검토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 8년 전인 2010년에도 냉전 시기 핵 실험과 관련된 장소로서 마셜제도의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처럼 전세계 1,199개의 세계유산 중(2024년 5월 기준) 최근 갈등 및 부정적인 기억과 관련된 장소들은 꾸준히 세계유산목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격을 가진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항상 순탄치 않았다. 갈등과 관련된 대표

적인 세계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경우도, ‘유사한 성격의 다른 장소의 등재를 제한하는 유일한 장소’로 등재가 되었으며,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돔)’의 경우도 ‘항구적인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원’의 상징으로서 다른 국가들(미국, 중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목록에 올랐다. 유일하고도 특별한 사례로서, 종종 관련된 당사국들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세계유산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우리가 유산(heritage)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유산 개념이 주로 건축적, 고고학적,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즉 고정된 가치를 가진 유형적 대상을 의미했다면, 오늘날에는 유산을 유무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호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자리 잡았다. 서구 중심의 유산 인식을 벗어나 아시아 혹은 지역 사회와 원주민들이 인식하는 유산 개념을 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산은 과거의 일부이기는 하나 현대의 필요성이나 인식 변화, 이해관계에 따라 유산으로 인식되거나 그렇지 않기도 한 가변적인 성격을 지닌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다.¹ 세계유산협약 역시 특정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유산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새롭게 세계유산의 종류로 포함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유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세계유산목록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1992년에 세계유산의 새로운 한 종류로서 도입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이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유럽권 유산을 더 많이 등재하고자 했던 당시의 의도와 인식 변화가 반영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갈등과 분쟁과 관련된 유산 역시 세계유산협약 초기부터 등재되기는 하였지만,²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성격을 가진 장소들을 당사국에서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 유산으로 인식하면서 잠

¹ Smith, L. 2006. *The Uses of Heritage*. (New York: Routledge)

² 앞서 소개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40~1945) (1979년 등재)’ 이전인 세계유산목록이 처음 구성된 1978년에도 세네갈의 ‘고레 삼’이 인류의 비극적인 사건인 대규모 노예무역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목록 신청이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수가 상당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 인식의 변화와 당사국의 요구에 맞춰 갈등이나 분쟁과 관련된 유산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나 민감한 특성들을 고려하기 위해 등재신청서 검토를 중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갈등과 관련된 장소를 기억의 장소이자 지켜나가야 하는 유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유산제도 바깥에서부터 20여 년간 발전해 온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갈등과 기억을 다루는 불편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발전 과정과 2018년 등재 검토 중지를 전후로 수행된 최근 갈등과 관련된 유산과 세계유산협약 간의 관계와 그 적합성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해당 연구들을 기반으로 제정된 지침원칙의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갈등과 관련된 기억 장소의 세계유산 등재가 미칠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 지침원칙의 의의와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의 초기부터 등재되어 온 성격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등재 신청 검토 중단을 거쳐 2023년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 유산의 등재 준비를 위한 지침원칙’의 제정을 통해 갈등기억유산이 세계유산 테두리 안에 자리 잡기까지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갈등기억유산 개념의 발전과 이해

2018년 갈등기억유산의 등재신청서 검토 중단 결정 이후,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여러 연구와 회의를 거쳐 2023년 1월에 개최된 제18차 세계유산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유산

의 등재 준비를 위한 지침원칙(이하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³’이 채택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사용한 용어는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이다. 여기서 사용된 기억의 장소(sites of memory)라는 용어는 프랑스 역사학자인 피에르 노라(Pierre Nora)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국가의 기억이 형성되는 장소(collective memory at a national level)’를 의미한다. 한 국가나 사회 집단의 집합적인 기억 혹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물리적인 장소 혹은 무형적 표현을 활용하며, 이러한 장소 혹은 표현들이 기억의 장소로 사회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노라가 정의한 기억의 장소와는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이야기하는 기억의 장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⁴ 지침원칙의 갈등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는 앞서 간략히 소개하였던 불편문화유산의 개념 형성과 그 확장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기에 적절할 것이다.

기억의 장소 혹은 불편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는 특히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다.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이어 20세기 초부터 각지에서 일어난 내전이나 전쟁들은 관련된 물리적 장소들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들은 “유산”이 되기 시작했다. 1996년 Tunbridge와 Ashworth는 ‘불화문화유산(dissonant heritage)’이라는 용어를 통해 달갑지 않은(undesirable) 유산의 의미를 한 사회나 그 사회의 일부가 스스로 혹은 남아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소의 유산화(heritagisation) 과정을 제시한다. 전쟁이나, 차별 혹은 박해와 관련되었을 때 여기서 비롯된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를 함께 기념하고 보존하는 “유산”으로 사회 내에서 받아들이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해

³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2.『세계유산 해석 전략 수립을 위한 갈등 세계유산 사례 연구』.

⁴ Kier, R. 2018, History, Memory and Public Life, Sites of Memory, pp.97~116.

당 유산들은 해당 사회 내에서 “불화문화유산”이 된다. 불화문화유산을 시작으로 9·11 테러로 무너진 미국 세계무역센터를 예시로 다룬 Meskell(2002)의 “부정문화유산(negative heritage)”과 독일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장을 통해 전후 독일이 긍정적인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불편함(difficulty)을 보여 준 Macdonald(2009)의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등 갈등과 관련된 장소의 유산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와 용어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⁵ 학자마다 본인이 정의한 용어의 의미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나, 전통적으로 한 국가나 공동체를 통합하여 긍정적인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가져온 유산(heritage) 앞에 붙은 불화, 부정, 불편 등의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가 붙은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불편문화유산”은 “현재에도 의미가 있지만 긍정적인 현재의 공동체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과거와 연결된 장소(Macdonald 2009)”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의 공동체가 함께 기념하고 보존할 만한 장소로서 유산이 되긴 하였지만, 이를 유산화(heritagisation) 하는 것이 부정적인 기억이나 고통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불편한(difficult)” 과거와 관련된 장소를 유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꺼려왔다.⁶ 특히 독일과 같은 가해국의 입장에서 국가의 영광스러운 과거가 아닌 홀로코스트와 같은 국가적 범죄를 보여주는 장소를 유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패전 이후 긍정적인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심했

기 때문이다. 일본의 세계유산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도 등재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이 전범국으로서 전쟁 책임을 이야기하기보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평화의 상징으로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었던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에 박물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추방과 저항의 역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애국심이나 자랑스러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프랑스 내의 나치 부역 행위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가치 있는 유산이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정체성 수립에 불편함을 줄지도 모르는 과오나 부정적인 기억들은 가리거나 숨기고자 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1세기가 지나서야 과거의 부정적 행위를 숨기기보다 이러한 부역의 증거를 마주하기 시작했는데,⁷ 여기에서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이 기억의 장소(sites of memory)로 전환되는 흐름을 찾을 수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정의한 기억유산은 “화해, 기억, 평화적 성찰의 장소를 대표해야 하고, 평화와 대화의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특정 장소이다. 본인이 정의한 불편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두고 “불편문화유산이 여전히 불편한가?(Is ‘Difficult Heritage’ Still ‘Difficult’?)”라는 논문을 쓴 Macdonald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나치와 관련된 과거 행위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에 불편하게 여겨졌던 불편문화유산이 더이상 불편한 대상이 아닌, 오히려 건강한 현재의 국가 정체

⁵ 용어별 상세한 정의 및 예시는 다음 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현경. 2018.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20, pp.163~192.

⁶ Macdonald, S. 2009. Difficult Heritage: Negotiating the Nazi Past in Nuremberg and Beyond. United Kingdom: Routledge.. Macdonald, S. 2015. Is ‘Difficult Heritage’ Still ‘Difficult’?. Museum, 67, pp.6~22.

⁷ Macdonald. 2015. op. cit.

⁸ “Decision 18 EXT.COM 4. Outcomes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s://whc.unesco.org/en/decisions/8046/>. 접속일: 2024년 5월 19일.

성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평화를 위한 성찰의 장소로서 갈등과 관련된 유산을 마주한다면 불편하고 꺼려졌던 장소들이 더이상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두운 과거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러한 장소를 쉽게, 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로 만들어 고통스러운 과거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20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캄보디아의 ‘뚜얼슬랭 대량학살 박물관(Former M-13 prison / Tuol Sleng Genocide Museum (former S-21) / Choeung Ek Genocidal Centre (former Execution Site of S-21))’은 1970년대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행해진 대량학살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곳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캄보디아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전 세계인이 함께 비극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점점 늘어나는 기억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유산들의 세계 유산 등재 신청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까지 이어지게 된 것도 유산 인식의 전환과 확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불편문화유산에서 겪었던 회피와 경시가 아닌 유산과 관련된 과거의 잘못이나 아픔을 마주하여 책임 있고 윤리적으로 유산의 의미와 역할을 인식하였을 때,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초국가적 담론을 형성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⁹

최근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유산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들도 갈등기억유산의 보존을 통해 유산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보다 확장적인 갈등기억유산의 역할도 주목 받고 있다.¹⁰ 식민지배 혹은 노예무역과 관련된 장소들

을 통해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지중해 이주 및 내전으로 인한 디아스포라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용광로와 같은 산업시설을 갖춘 산업유산도 해당 시기에 사용된 화석연료가 오늘날의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갈등기억유산이 가지고 있는 반성과 기억이라는 역할에서 나아가 더 넓은 청중이 유산을 통해 전 지구적, 현대적 의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불편문화유산 혹은 갈등기억유산에 대한 인식과 유산으로서의 인식 확장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갈등기억과 관련된 장소가 한 사회 내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갈등기억의 원인이 된 사건으로부터 현재까지 시간적 흐름이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해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반성과 화해의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불편한 장소가 아닌 비극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어두운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바라보는 시각은 같은 시대이더라도 개인, 집단 혹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과 같이 화해와 반성에 이르지 못한 장소를 전 지구적 논의를 위한 논의의 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함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기억유산을 해석하고 보존할 때는 갈등기억유산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의 경우, 인류의 유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따라 거시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소수자의 기억이나 역사에 대한 경시 혹은 궁정적인

⁹ Daugbjerg, M., Eisner, R. and Knudsen, B. T. 2017. Re-Enacting the Past: Heritage, Materiality and Performance. Routledge. Huang, S.-M. 2022.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Reconciliation. In: Silberman, N. (Ed). World Heritage : 50 Years and Moving Forward. Sejong City :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pp.126~145.

¹⁰ 유네스코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2023. 앞의 책.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갈등기억유산이 가지고 있는 화해와 반성, 그리고 현대적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Ⅲ.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 과정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불편문화유산의 개념 등장 및 발전에 따라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과 이러한 장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점이 부재하여, 세계유산센터는 2개의 실무그룹을 통해 각각 기억의 장소의 해석과 등재기준 (vi)의 사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실무그룹의 운영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제도 내에서 갈등기억유산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억의 장소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양심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ICSC)이 수행하였다. 2018년 1월에 공개된 이 연구에서는 이후 소개할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넓은 기억의 장소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갈등기억유산의 등재 자체가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에 적합한지 따지기보다는 이미 등재된 유산을 기억의 장소라고 할 때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세계유산협약의 목적과 유네스코의 평화 구축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¹¹ 특히 등재기준 (vi)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기억/연관적 가치를 가진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일부 혹은 추가로 이러한 가치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실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적어도 50년이나 2세대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의 장소로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야 포용적인 유산 해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 독립적인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1월에 제출된 등재기준 (vi)에 관한 연구는 독일의 라인란트팔츠 주의 지원으로 크리스티나 카메론과 유디트 헤르만¹²이 수행하였다. 이들은 물리적 실체와 연결되는 연관성 중요성을 결정하는 등재기준 (vi)의 발전 과정과 개정 필요성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등재기준 (vi)의 개정보다 실질적으로 해당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평가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등재기준 (vi)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관적 가치의 경우에는 무형유산 혹은 기록유산 등재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2018년 4월에는 ICOMOS가 앞선 두 실무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최근 갈등 기억과 관련된 장소의 세계유산 등재 평가” 보고서¹³를 통해 자문기구로서 이러한 성격의 유산 등재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ICOMOS가 우려한 부분은 세계유산의 가치가 등재되는 시기에 등재와 함께 정해지고, 이후에는 고정되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가 갈등 이후 복잡하게 변화하는 유산 가치의 역학(dynamics)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류의 유산을 등재하는 세계유산제도 내에서 지역적 갈등에서 비롯된 유산 가치가 어떻게 전지구적 사회가 공감할 만한 공통성(commonality)을 가질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시각이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내러티브와 기억을 중립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등재기준 (vi)의 사용에서 필수적인 비교 연구에 있어서도 비극이나 희생과 관련된 경우, 의미있는 비교 연

¹¹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018.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¹² Cameron, C. and Herrmann, J. 2018. Guidance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recognition of associative values using World Heritage criterion (vi).

¹³ ICOMOS. 2018. Evalu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ICOMOS는 갈등기억유산에 대한 철학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전문가 회의를 가질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요구하게 된다.

이 요구에 따라 2018년 6월에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유산의 등재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러한 성격의 유산이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한다.¹⁴ 이듬해인 2019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¹⁵에서는 앞선 2018년 ICOMOS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유산의 가치를 고정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화해 과정을 방해하거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희생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거나, 갈등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우선하여 다른 대안적 내러티브들을 배제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결국 해당 전문가 회의에서도 갈등기억유산은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의 목적과 범위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2020년 2월에는 ICOMOS가 2018년에 제출하였던 연구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여 “최근 갈등과 관련된 유산과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의 목적과 범위와 관련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공개한다.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아프리카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준 보고서를 발전시키길 ICOMOS에 요구하였고, 이에 ICOMOS는 아프리카 지역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통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고서는 먼저

세계유산협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유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최근 몇 년간 늘어난 갈등기억유산의 등재 신청 수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결과로 새로운 유행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세계유산협약이 이러한 유행에 맞춰 얼마나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계유산협약과 유네스코가 가진 목표와 기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갈등과 관련된 장소가 모든 다르거나 혹은 경쟁하는 기억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결국 이러한 논쟁이 서로 다름이 계속 존재함을 보여주기에, 결코 평화와 화해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유산협약이 하나의 ‘주요한(main)’ 버전의 갈등과 관련된 내러티브나 기억을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¹⁶ 2018년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는 기억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정하여 고정하는 것이 역설적이며, 유산에 다양한 내러티브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평화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가지는 긍정적 메시지를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결국 2020년 보고서에서도 갈등기억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혹은 유럽유산라벨(European Heritage Label)과 같은 다른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020년 5월 올웬 비즐리와 크리스티나 카메론의 연구는 갈등기억유산과 등재기준 (vi)을 “역사적 연구를 비전문적인 관객들이 접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¹⁴ “Decision 42 COM 5A. Report of the World Heritage Centre on its activ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decision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s://whc.unesco.org/en/decisions/7109/>, 접속일: 2024년 5월 19일

¹⁵ “WHC/21/44.COM/INF.8.1 Outcomes of the Expert meeting on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 (Paris, 4–6 December 2019)”,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s://whc.unesco.org/archive/2021/whc21-44com-inf8.1-en.pdf>, 접속일: 2024년 5월 19일

¹⁶ ICOMOS. 2020.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an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flection on whether and how these might relate to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 p.22.

하는¹⁷” 공적 역사(public history)와 기억학적 맥락에서 접근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편성(universality)과 선택성(selectivity), 교육(education) 그리고 평화 구축(building peace)의 관점에서 왜 갈등기억유산이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의 범위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지 서술한다.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정하는 세계유산제도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치와 내러티브를 가진 갈등기억유산의 성격이 상충되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각 당사국들이 서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건들과 관련된 장소를 등재하길 희망한다면 비슷한 성격의 장소들에 대한 등재신청서가 과도하게 많아질 것을 우려하였다. 탁월한 사례를 선별하여 등재를 하는 세계유산협약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한 장소를 특정 내러티브만을 내세워 등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유네스코의 평화 구축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유산센터는 앞서 소개한 3건의 연구(2019 전문가 회의, 2020 ICOMOS, 2020 Beazley & Cameron)를 기반으로 갈등기억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무리한다.¹⁸ 2021년 중국에서 열린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이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 등과 같은 장소들이 특정한 유산 종류로서 [등재 되기에] 적합한 기준의 정의에 대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¹⁹” 지금까지의 연구에 반영되지 않은 갈등기억유산에 대한 다른 시각(other views)들을 반영하여 위한 공개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유네스코의 정책 우선 지역(Priority Africa)에서 등재 수요가 많은 갈등기억유산을 세계유산에 포함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몇몇 등재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 이 자문기구의 권고 내용보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과 위원국의 의사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향²⁰을 해당 결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1년 11월에 시작된 공개실무그룹은 2022년 6월까지 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초안을 구성하게 된다. 2018년에 내린 갈등기억유산의 등재 신청서 검토 중단 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갈등, 최근, 기억의 장소를 정의함에 대해 당사국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개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갈등, 최근 그리고 기억의 장소의 범위가 기존 연구들 보다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무그룹에 참여한 국가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갈등 사건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등재신청된 유산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갈등기억유산의 등재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이의 해소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당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등재신청서를 등재 결정 전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등재기준(vi)을 활용한 갈등기억유산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등재 신청 간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합의하는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갈등기억유산의 범위를 정하고, 등재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과 이의제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여 지침원칙이 구성되었다. 다음 해 1월에 열린 제18차 세계유산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해당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여

¹⁷ Beazley, O., and Cameron, C. 2020. Study on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 p.8.

¹⁸ <https://whc.unesco.org/en/memoryreflection/>

¹⁹ “WHC/21/44.COM/8 Nomination proces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s://whc.unesco.org/archive/2021/whc21-44com-8-en.pdf>. 접속일: 2024년 5월 19일.

²⁰ Bertacchini, E., Liuzza, C., Meskell, L. et al. 2016. The politicization of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 making. Public Choice 167, pp. 95~129.

관련 연구와 논의를 마무리한다.

갈등기억유산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의 가장 큰 분기점은 2018년에 내려진 갈등기억유산의 등재 신청서 검토 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18년 ICSC의 보고서의 서문에는 연구 배경으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 철강 · 조선 · 석탄 산업(2015)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의 등재 결정 등을 언급한다. 이처럼 그 이전부터 발생하였던 유산을 둘러싼 당사국 간의 유산 해석 갈등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 수를 늘리기 위한 세계유산센터와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략 목표가 세계유산제도 내의 기억의 장소 혹은 갈등기억유산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구성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의 기간 동안 여러 연구와 전문가 회의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개실무 그룹 회의를 거쳐 탄생하게 된 갈등기억유산지침원

칙은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파트는 지침원칙으로 갈등기억유산의 등재가 세계유산제도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핵심 용어인 ‘갈등(conflict)’, ‘최근(recent)’, ‘기억의 장소(sites of memory)’의 정의, 갈등기억유산의 등재 준비를 위해 고려해야 할 6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파트는 갈등기억유산의 등재신청서에 담겨있는 유산 가치에 대해 다른 당사국이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위원회 그리고 자문기구에 알릴 수 있는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다룬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제정 이전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등재신청서 검토가 중단된 유산의 경우, 등재 추진 방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1. 파트 1: 지침원칙

1) 제1항에서 제11항: 갈등기억유산의 범위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파트 1의 1항부터 11항까지는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에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갈등, 최근, 기억의 장소에 대한 정의를 소개한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챕터

표 1 관련 연구 및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용어별 정의

	ICOMOS 1차 보고서 (2018. 4)	전문가 회의 (2019. 12)	ICOMOS 2차 보고서 (2020. 2)	Beazley & Cameron (2020. 5)	The Guiding Principles (2023)
갈등 conflicts	전쟁, 전투, 대학살, 대량학살, 인종 박해 및 다수의 당사자 간의 대립적 견해가 관여한 다른 부정적 사건. (노예 노동 또는 해방 운동은 제외함)	전쟁, 전투, 대학살, 대량학살, 고문 및 대규모 인권 침해와 같은 사건	전쟁, 전투, 대학살 및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관여와 희생으로 인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부정적인 사건들	노예 제도, 식민 지배, 강제 노동, 억압적 정권, 인질 수용 및 잔혹 행위	전쟁, 전투, 대학살, 종족 학살, 고문, 군사 점령, 민족 자결 운동, 저항 운동, 식민 해방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아파르트헤이트)과 점령, 추방, 망명, 대량 인권 침해, 영토적 완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행위
최근 (갈등) recent (conflicts)	20세기와 21세기의 갈등	20세기의 시작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에서 비롯된 부정적 기억이 최근에 대한 일반적인 시간 프레임을 초과하여 여러 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음	20세기와 21세기의 갈등		일반적으로 20세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되며, 갈등에서 기인한 민감한 성질의 기억이 일시적인 시간을 넘어 여러 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음
기억의 장소 sites of memory	기억 혹은 기억들이 주로 그 장소에 주된 가치를 부여하거나, 잠재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제공하는 장소들			국가 및 그 국민(또는 적어도 그들 중 일부)이 기억하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한 공공 공간. 해당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과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만들 어져 기억의 장소가 되었고, ‘의도하지 않은 기념물(unintentional monuments)’임	국가와 그 국민들(적어도 일부의 국민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난 장소. (...) 물질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장소 혹은 그들의 기억적 측면에 연결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경관적 특징을 지닌 특정 장소

을 통해 2018년의 갈등기억유산 등재 신청 검토 중단 결정은 철회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유산협약이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가장 탁월한 장소를 선택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²¹으로 하기 때문에 갈등과 관련된 모든 장소들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를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유산이 갈등기억유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각 용어의 정의를 제시한다. <표 1>과 같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정의는 이전 연구들의 정의를 반영 및 수정하여 제시되었다. 갈등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이전 연구들에 비해 늘어났으며, ‘최근’이라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20, 21세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관련된 기억이 가지는 지속성에 주목하여 20세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기억의 장소’도 단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넘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관 혹은 기념관 역시 포함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억의 장소에 대해서는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화해, 기억, 평화 및 교육의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12항에서 13항: 등재 준비 사항

12항과 13항에서는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유산의 등재 준비를 위한 지침원칙’이라는 명칭에 맞게 당사국이 갈등기억유산을 등재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의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정하는 갈등기억유산의 등재 조건은 앞서 소개한 최근, 갈등 그리고 기억의 장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등재기준 (vi)을 만족시켜야 한다. 물리적인 장소의 탁월성보다 장소와 얹힌 사건이나 사상 등의 연관성이 탁월하고 보편적일 때에 사용하는 등재기준 (vi)²²이 전쟁이나

표 2 제12항 조항별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세부 내용
a	등재기준 (vi)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기준 (vi)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 가지 평가 단계 재확인
b	기억 왜곡 방지를 위한 진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 왜곡 방지를 위한 정확한 사실 서술 • 여러 층위(지역, 국가, 국지, 국제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최소화
c	이해관계자의 등재 과정 참여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규명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 • 유산의 의미 및 가치, 해석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확보
d	해석 전략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전체적 의미와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다중적 해석 전략 수립 • 역사적인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포함할 것 • 이해관계자들의 해석 전략 수립 과정 참여
e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적 서사를 반영한 예방적 교훈과 화해와 평화 주제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정보 사업 수립 • 지나치게 하나의 서사를 선호하지 않는 접근 법 필요
f	화해 과정으로서의 갈등기억유산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화해의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 • 잠자적 OUV로서 제안된 가치들이 화해와 대화를 촉진할 것

저항 운동과 같은 갈등의 유산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재기준 (vi)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단계(① 연계적 가치의 탁월한 보편성 명시, ② 연계적 가치를 보여주는 유형적 증거, ③ 비슷한 장소들 중 가장 탁월하고 보편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교 연구 결과)를 거쳐야 한다.

b조항부터 f조항까지는 전반적으로 갈등기억유산을 등재 시 필요한 접근법을 보여준다. 먼저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추가적인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과정의 일부여야 함을 이야기한다. 갈등기억유산이 내세우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갈등 이후에 진행 중인 대화와 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의 전체 의미에 대한 고려와 층위별(지역, 국가, 국지, 국제적)로 다를 수 있는 유산에 대한 관점을 인정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서술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Authenticity)을 만족시키고, 추가적인 불화를 최소

21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제1조 (출처: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 접속일: 2024년 5월 19일)

22 등재기준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출처: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 접속일: 2024년 5월 19일)

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등재 초기 단계부터 권장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d항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기억유산은 유산의 전체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유산 해석의 발전 단계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c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서술하였는데, 관련된 당사국들,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공동체,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 지자체, 장소에 대한 권리 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을 예시로 제시한다. 이들을 등재 신청 과정에서 규명하는 것이 당사국의 책임과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적 가치로서 내세우게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갈등기억유산 등재신청서에 새로운 하위 항목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해 둔 ‘해석 전략(d항)’과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e항)’은 이러한 접근법을 담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d항: 등재신청서 내용에 “해석 전략”이라는 별도의 하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산에 대한 다른 관점과 서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하며, 해석 전략은 유산의 전체적 의미를 정확히 보여주고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층적이어야 한다. 갈등이 일어난 해당 물리적 장소와 해석 수단들은 해석 전략의 일부 가 될 것이다. 해석 전략은 평화구축의 관점과 대화 촉진의 차원에서 해당 장소의 역사적인 과거와 현재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 유산의 주제와 연관된 현안에서 유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한다. 해석 전략은 유산의 이해관계자들이 유산 해석의 발전단계

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e항: 등재신청서의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하위 항목에는 다큐멘터리와 아카이빙 자료, 증언 및 물질적 증거들을 활용하여 충실히 조사와 비교 연구를 토대로 다층적 서사들을 포함하는 등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윤리적, 학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과 정보 사업 계획을 포함한다. 최근 갈등과 관련된 기억유산은 잠재적으로 예방적인 교훈을 가르쳐야 하며 화해와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 반면, 다양한 가치들이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유산에서는 지나치게 하나의 서사를 선호할 수 있으며, 이는 배제와 부정으로 이어지고 평화가 아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양식²³의 여러 항목 중 어느 것의 하위 항목으로 ‘해석 전략’과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파트 1의 마지막 항인 13항의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항: 현존하는 절차와 등재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등재에 대해 등재신청국들이 해석, 교육과 정보 그리고 화해와 관련하여 명시된 지침원칙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는 등재신청서의 내용이 유산 해석, 교육과 정보 그리고 화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재기준과 관계 없이 등재신청국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을 참고하여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결정문과 연결된 문서인 공개실무그룹 보고서²⁴의 29항에서는 이 지침원칙이 결국

²³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3. Annex 5. FORMAT FOR THE NOMINATION OF PROPERTIE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²⁴ “WHC/23/18.EXT.COM/INF.4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UNESCO World Heritage Centrre(<https://whc.unesco.org/archive/2023/whc23-18extcom-INF.4-en.pdf>, 접속일: 2024년 5월 19일).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과 호환되도록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갈등기억유산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경우에 다른 등재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는 갈등기억유산이거나, 유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유산의 경우에 해당 지침원칙의 내용을 참고하는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파트 2: 이의제기를 위한 메커니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해당 유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당사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는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등재신청서에 서술된 유산의 역사나 법적 지위에 대해 특정한 의견을 지지하거나 우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다. 결국 유네스코 사무국이나 세계유산 위원회가 하나의 유산을 갈등기억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유네스코 헌장 제1조에 따른 국가 간의 협력 촉진과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등재신청국이 등재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파트 1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갈등기억유산은 유산 특성 상 같은 유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나 역사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체 역사와 현재 의미를 다룰 수 있는 해석 전략 등을 통해 불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등재신청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등재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다른 당사국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세계유산센터와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리고 최대한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이의제기 메커니즘의 목표이다. 세계유산목록은 단계적으로 잠정목록

과 본 등재로 나누기에, 이의제기를 위한 메커니즘도 두 가지 등재 단계를 나누어서 제시한다.

1) 잠정목록 신청 및 명단에 대한 이견

이미 잠정목록에 올라있는 유산 혹은 신규 제출된 잠정목록 유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국은 세계유산 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²⁵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계유산센터는 이의제기의 내용을 등재신청국, 자문기구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와 공유하여 잠정목록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재 신청국과 이의제기 국가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가진다.

2) 신규 제출된 등재에 대한 의견

본 등재의 경우 기존 운영지침에서 정한 세계유산 등재 일정에 맞춰 이견이 있는 당사국이 이의를 신청하고 등재신청국이 이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자문기구와 세계유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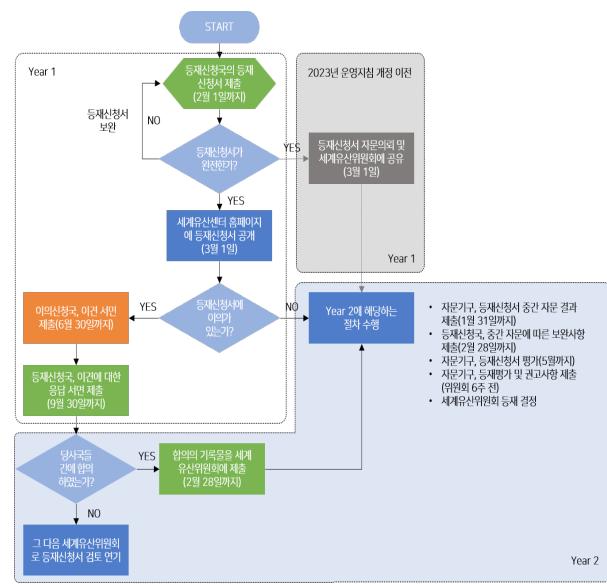


그림 1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 따른 이의제기 메커니즘 순서도(저자 작성).

25 이의제기를 위한 양식(Form for the submission of contestations concerning a Tentative List entry or a submitted nomination)과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Form for the submission of response to contestations concerning a Tentative List entry or a submitted nomination) 양식 모두 세 계유산센터 홈페이지(<https://whc.unesco.org/en/nominations/>, 접속일: 2024년 5월 7일)에서 찾을 수 있다.

원회에게만 공개되던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당사국들이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등재 결정 전에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절차에서는 등재신청국은 완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Year 1 기간에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등재기준 (vi)을 활용하는 갈등기억유산일 때, 등재신청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재신청국은 이의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고, 이의신청국과 대화 및 합의의 과정을 기록하여 이를 Year 2에 보완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파트 2의 첫 항인 14항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신청서 내용에 대해 등재신청국이 실질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구현해 둔 것이다.

다만 등재신청국과 이의신청국이 등재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국가들 간에 대화를 지속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그다음 해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해당 등재신청서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 간에 등재신청서의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등재신청서는 다음 해에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유네스코 유산 보호 제도 중 하나인 유네스코 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서는 등재신청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유산의 등재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 과정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검토를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선례를 따르지 않고 세계유산제도 내에

서는 등재 결정 권한을 가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한(prerogatives)을 존중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이견이 있는 갈등기억유산의 등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V.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의의와 한계

1.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의의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지침 원칙과 관련된 연구와 회의, 그리고 최종적인 채택을 통해 갈등기억유산이 세계유산의 한 종류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앞선 장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갈등기억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의 시작 초기부터 세계유산목록에 올라왔지만 등재결정문에 해당 유산의 등재는 특수한 사례라는 단서가 붙거나²⁷, 2018년에는 갈등기억유산의 등재신청서 검토 중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금껏 예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갈등기억유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산 해석 차이로 인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상황이 전 세계인의 유산을 등재하는 세계유산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개개인 혹은 집단이 유산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로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해에 따라 유산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²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더해 갈등과 관련된 장소를 유산으로 보

²⁶ General guidelines of the Memory of the World (MoW) Programme의 8.6 Incidental process 참고(문서번호: CI/MOW-REG/2021/Guidelines/1)

²⁷ The Committee decided to enter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on the List as a unique site and to restrict the inscription of other sites of a similar nature. ("CC-79/CONF.003/13 3r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https://whc.unesco.org/archive/1979/cc-79-conf003-13e.pdf>. 접속일: 2024년 5월 30일)

²⁸ Urry, J. 1996. How societies remember the past. In: S Macdonald and G Fyfe (Eds), *Theorising Museums*. UK: SAGE Publications Sage, pp.45~65; Uzzell, D and Ballantyne, R. 1998. Heritage that hurts: interpretation in a post-modern world. In: R Ballantyne and D Uzzell (Eds), *Contemporary issues in heritage and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 problems and prospects*. Stationery Office. pp.152~171; Graham, B. 2002. Heritage as knowledge: Capital or culture?. *Urban Studies*, 39(5~6). pp.1003~1017.

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이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설명하였을 때 해당 유산이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하고 있다. 다양한 내러티브를 가질 수 있는 갈등기억유산이 가진 가능성은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유산의 종류를 확장한 것이다. 여전히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 8항에서는 이러한 장소들의 평가를 사례별(case-by-case)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도의 검토 중 단 결정을 철회하고 갈등기억유산으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지침원칙을 통해 정한 것은 갈등기억유산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세계인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 전략 수립의 의무화도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주된 의의 중 하나이다. 유산 해석(heritage interpretation)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해 수혜자를 늘릴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유산의 경우, 유산 등재에 비해 유산 해석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용어 자체를 세계유산 협약에서 찾을 수 없고, 운영지침에서도 여섯 차례 정도로만 언급되는 등 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해석 전략에 관한 문단으로 유산 해석에 필요한 접근법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 형식으로 공식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는 하나의 유산에 대해 서로 다른 서사가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산의 다층적인 전체 역사를 보

여줄 것, 그리고 유산이 가진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 전략을 통해 다룰 것을 권고한다. 이는 최근 세계유산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외에 다른 가치를 함께 존중하고자 하는 접근에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⁹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서도 점차 ‘전체론적 해석’이나 ‘완전한 역사’ 등 유산 해석에 대한 권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³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세계유산제도 내에서 다소 모호했던 유산 해석에 대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 파트 1의 제13항이 이러한 접근에 근거 조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지금껏 내려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등재기준(vi)을 사용하지 않은 유산의 경우라도, 유산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석 전략의 수립 혹은 당사국 간의 대화의 지속 권장 등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권고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사도금광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 두 유산의 등재결정문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 해석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보존상태보고서(Statement of Conservation)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내에 해석 전략의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등재기준(vi)을 사용하지 않는 유산일지라도 전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산 해석 및 설명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앞서 이의 제기 메커니즘에서 소개하였던 등재신청국의 등재신청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등재 절차와 달리 갈등기억유산

²⁹ 세계유산 맥락에서의 영향평가를 위한 지침과 툴킷(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 in a World Heritage Context) (UNESCO, ICCROM, ICOMOS, IUCN 2022)과 세계자연유산 관리 매뉴얼(World Heritage Resource Manual: Managing Natural World Heritage) (UNESCO, ICCROM, ICOMOS, IUCN 2012) 등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발간하는 리소스 매뉴얼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³⁰ UNESCO WHIPIC Education and Networking Office. 2022. “Analysis on the uses of term “interpretatin” in decisions of World Heritage Committee from 2019 to 2021”. Unpublished

지침원칙에 따르는 유산인 경우, 등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이의신청국과 대화 및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역할이 확장되었다. 단순히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이의에 답변하고 이를 보고하게 하여 등재신청국이 등재신청서의 내용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등재신청서는 전적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국가가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해당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전체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³¹ 갈등기억유산과 일반 유산을 구분짓지 않고, 모든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세계유산제도 운영의 신뢰도 역시 높이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한계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지침원칙으로서 역할을 세계유산제도 내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지침원칙에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적용 범위를 등재기준 (vi)을 사용하는 갈등, 기억 그리고 기억의 장소 각 용어의 정의에 맞는 유산으로 한정한 것이다. 갈등기억유산이 반드시 등재기준 (vi)을 사용해서 등재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의견이 존재하나³²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이야기하는 지침원칙의 사용조건은 등재기준 (vi)의 적용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세계유산 해석 갈등을 빗고 있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과 ‘사도금광산(Sado Island Gold Mines)’, 두 유산 모두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명백한 갈등기억유산인 두 유산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사용조건인 등재기준 (vi)

을 적용하지 않았기에 일본이 지침원칙을 따라 관련 국가와 대화와 합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유산이 된 것이다. 이처럼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국가가 해당 유산이 등재기준 (vi)에서 평가받는 가치 외에 다른 가치에 초점을 맞춰 다른 등재기준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면, 해당 유산을 갈등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로 인식하는 다른 국가나 집단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정한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해석 전략의 수립도 기대할 수 없다. 갈등기억유산의 등재를 통해 관련 국가들의 대화와 화해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본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 이전에 이루어진 자문기구와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우려한 내용이다. 앞서 설명하였듯 13항의 예외 조항이 존재하나 이 경우 등재신청국이 얼마나 진실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유산 가치를 해석하여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이러한 한계에서 주목할 점은 유산 해석과 관련된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를 살펴보았을 때,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산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해석 전략을 수립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유산은 등재기준 (ii), (iv)로 등재되었으나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전체 역사와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해당 권고에 따른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2017, 2021년에 각각 보존상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추가적으로 2020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내용을 포함한 ‘해석전략실행보고서’

³¹ Decision 18 EXT.COM 4을 근거로 현재 운영지침 III.D Registration of nomination dossiers 140항에 따르면 등재신청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³²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세계유산 해석 전략 수립을 위한 갈등 세계유산 사례연구(2022)와 ‘갈등기억유산의 해석을 통한 유산의 확장적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2023)’ 그리고 Asian Network of Industrial Heritage의 2024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al Heritage 토론 내용 참고.

를 그 해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와 추가적인 보존상태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에도 관련 당사국인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이 대화의 내용을 반영한 해석 전략 향상 수단을 2024년 말까지 보고하도록 권고받았다. 이처럼 등재신청국이 의도를 가지고 갈등기억을 회피하였을 때 발생하는 갈등은 등재 결정으로 봉합되는 것 이 아닌 신청국의 추가적인 대응과 이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검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제도 내에서도 유산 해석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석 전략의 수립을 갈등기억유산에만 한정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렇기에 적어도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석 전략을 전체 세계유산이 등재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다음은 해석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재이다. 2023년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으로 올해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등재기준 (vi)을 사용하는 갈등기억유산은 그 등재신청서 내에 한 하위 항목으로 해석 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지침원칙 내 해석 전략에 대한 문단을 참고하여 해석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차적으로 등재신청서 내에 어느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해석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어느 수준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재신청국의 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해석 전략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구가 유산 등재를 심사할 때 요구하는 해석 전략 문서의 수준을 합의하여 당사국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갈등기억유산 등재신청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수립한 세계유산의 사례³³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운영지침 내 유산 등재신청서 양식의 어떤 항목이 해석 전략을 포함할지, 해석 전략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VII. 결론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난 50여 년간 세계인이 함께 기억하고 보호해야 하는 유산이 된 폴란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포함하여 노예 제도, 식민 지배, 독재에 대한 저항 운동 등 어두운 역사와 관련있는 장소들은 지구 곳곳에서 세계유산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가 불러올 수 있는 추가적인 불편함이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이러한 성격을 가진 유산들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검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점차 늘어가는 협약가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을 통해 갈등기억유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게 되었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해당 지침원칙의 적용을 받기 위한 유산의 성격과 등재기준,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부터, 유산의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제시하여 갈등기억유산 등재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은 갈등기억유산도 세계유

³³ 2018년에 발간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의 초국경유산인 바덴 해(Wadden Sea), 2017년에 발간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석탄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그리고 2011년에 발간된 영국의 하드리아누스 방벽 (Frontiers of the Roman Empire로 확장 등재) 등이 해석 전략 혹은 유사한 성격의 계획을 수립한 사례이다. 이 세 유산 모두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은 유산으로 등재기준 (vi)이 가지는 특수성을 해석 전략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 참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유산 관리 계획 내에 해석 전략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례(모리셔스의 아프라가시 바트(Aapravasi Ghat) 등)도 있다.

산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세계유산제도 내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하였던 유산 해석(heritage interpretation)에 대해서도 해석 전략을 통해 어떠한 역할과 접근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유산 등재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도 한계가 존재한다. 1972년에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한 10가지 세계유산 등재기준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갈등 혹은 어두운 역사, 기억과 관련된 경우, 주로 사용되는 등재기준 (vi)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유산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가지는 가치가 부족하더라도 장소와 전쟁이나 갈등과 같은 사건을 서로 연결 짓는 연관성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성에 초점을 맞춘 등재기준이다. 하지만 등재기준 (vi) 아래 해당 유산을 갈등기억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등재를 신청하는 당사국이 해당 유산이 가진 연관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가치를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고자 하였을 때 가능하다. 등재신청국이 해당 국가의 유산과 관련된 불편한 혹은 어두운 역사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유산 가치로 해석했을 때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이 가진 의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사국이 가진 의도에 따라 해당 유산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을 따라야하는 갈등기억유산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산 해석과 관련된 경우, 13항의 권고에 맞춰 당사국이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갈등기억유산이 가지는 역할은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갈등기억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세계 평화 혹은 문명의 성취라는 더 큰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추

가적인 갈등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등재신청국이 어떠한 이유로 등재기준 (vi)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가치에 초점을 맞춰 등재를 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세계유산제도가 지금껏 비판받아 온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유산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는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석 전략을 포함한 여러 원칙을 모든 세계유산 등재에 확대 적용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접근법(평화와 화해,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은 전체 세계유산의 등재에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계유산제도의 운영에 지침원칙의 해석 전략과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 내에서 의결에 따른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유산 해석과 관련한 갈등을 겪어온 국가 이자 위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전체 세계유산의 해석 전략의 수립 의무화 등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갈등기억유산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물리적 장소와 연결되어 처음에는 보호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인식된다. 점차 과거의 잘못이나 아픔을 마주하여 화해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장소로 그 역할을 확장해 왔다.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화해와 치유의 장소이자 갈등에서 비롯한 사회 구조가 지금의 현대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현세대가 마주해 나갈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서 제시한 갈등기억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지침들을 따라간다면 세계유산이 된 갈등기억유산 역시 화해와 치유에서 더 나아가 더 현재의,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에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등재신청서

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24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등재신청서는 기존 절차대로 위원국에게만 공개가 되었으며, 아직 해당 지침원칙에 따라 등재신청서를 작성한 유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향후 등재신청서 공개의 영향과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에 따른 등재신청서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갈등기억유산을 둘러싼 국가, 집단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기억유산지침원칙의 채택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추후 국내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추가적인 갈등기억유산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2,『세계유산 해석 전략 수립을 위한 갈등 세계유산 사례 연구』.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2023,『갈등기억유산의 해석을 통한 유산의 확장적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 이현경, 2018,「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도시연구』20, 도시사학회, pp.163~192.
- Beazley, O. and Cameron, C. 2020. Study on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
- Bertacchini, E., Liuzza, C., Meskell, L. et al. 2016. The politicization of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 making. *Public Choice*, 167.
- Cameron, C. and Herrmann, J. 2018. Guidance and capacity building for the recognition of associative values using World Heritage criterion (vi).
- Daugbjerg, M., Eisner, R. and Knudsen, B. T. 2017. Re-Enacting the Past: Heritage, Materiality and Performance. Routledge.
- Graham, B. 2002. Heritage as knowledge: Capital or culture?. *Urban Studies*, 39(5~6).
- Huang, S.-M. 2022.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Reconciliation*. In: Silberman, N. (Ed). *World Heritage : 50 Years and Moving Forward*. Sejong City :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ICOMOS. 2018. Evalu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s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 ICOMOS. 2020.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an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flection on whether and how these might relate to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
-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2018.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 Kier, R. 2018. *History, Memory and Public Life*. In: Anna Maerker, Simon Sleight and Adam Sutcliffe. (Eds). *Sites of Memory*. Routledge.
- Macdonald, S. 2009. Difficult Heritage: Negotiating the Nazi Past in Nuremberg and Beyond. Routledge.
- Macdonald, S. 2015. Is 'Difficult Heritage' Still 'Difficult'? . *Museum*, 67.
- Smith, L. 2006. *The Uses of Heritage*. Routledge.
- UNESCO WHIPIC Education and Networking Office. 2022. Analysis on the uses of term "interpretation" in decisions of World Heritage Committee from 2019 to 2021, Unpublished.
- Urry, J. 1996. *How societies remember the past*. In: S Macdonald and G Fyfe (Eds). *Theorising Museums*. SAGE Publications Sage.
- Uzzell, D and Ballantyne, R. 1998. *Heritage that hurts: interpretation in a post-modern world*. In: R Ballantyne and D Uzzell (Eds), *Contemporary issues in heritage and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 problems and prospects*. Stationery Office.

웹사이트

- “세계유산협약(국문)”,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홈페이지, 2024년 5월 19일 접속(<https://heritage.unesco.or.kr/>).
- “CC-79/CONF.003/13 3r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4년 5월 30일 접속(<https://whc.unesco.org/archive/1979/cc-79-conf003-13e.pdf>).
- “Decision 18 EXT.COM 4. Outcomes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4년 5월 19일 접속(<https://whc.unesco.org/en/decisions/8046/>).

참고문헌

- “Decision 42 COM 5A, Report of the World Heritage Centre on its activ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decision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4년 5월 19일 접속(<https://whc.unesco.org/en/decisions/7109/>).
- “Reflection on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4년 5월 19일 접속(<https://whc.unesco.org/en/memoryreflection/>).
- “WHC/21/44.COM/8 Nomination proces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4년 5월 19일 접속(<https://whc.unesco.org/archive/2021/whc21-44com-8-en.pdf>).
- “WHC/21/44.COM/INF.8.1 Outcomes of the Expert meeting on sites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nd other negative and divisive memories (Paris, 4–6 December 2019)”,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4년 5월 19일 접속(<https://whc.unesco.org/archive/2021/whc21-44com-inf8.1-en.pdf>).
- “WHC/23/18.EXT.COM/INF.4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4년 5월 19일 접속(<https://whc.unesco.org/archive/2023/whc23-18extcom-INF.4-en.pdf>).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Preparation of Nominations Concerning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HEO Sujin

Programme Specialist, Research Offic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WHIPIC)

hsujin2016@gmail.com

Abstract

Since the adop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sites associated with dark histories have been inscribed as World Heritage sites over the past fifty years. However, in 2018, the review of nomination dossiers for these sites was temporarily suspended to prevent additional discomfort or the conflicts these inscriptions might cause. Despite concerns raised by experts about nominations of these sites, the increasing demands from State Parties led to the adop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 Preparation of Nominations Concerning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These Guiding Principles have made it possible to inscribe such sites as World Heritage sites.

The Guiding Principles play a crucial role in outlining the nature and criteria for inscription, the components required in the nomination dossier, and mechanisms for notifying a contestation in cases of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site. Their primary aim is to minimize further conflicts that may arise from the inscription of sites of memory. They affirm that such sites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represent a significant step in addressing heritage interpretation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The amendment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to incorporate a contestation mechanism has arguably established a more transparent and open inscription process. However, the Guiding Principles also have limitations. Among the ten criteria set by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sites related to conflicts or dark histories can use Criterion (vi). This criterion focuses on the site'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linked to historical events or associations, regardless of physical evidence. If a State Party chooses not to use Criterion (vi), the applic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cannot be expected. Furthermore, while the Guiding Principles require a heritage interpretation strategy in the nomination dossier, the lack of detailed guidance may confuse nominating countries.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s are not just places that need protection and remembrance due to their association with dark histories. They have also evolved to become spaces for reconciliation and healing. The inscription of these sites as World Heritage sites is not just a recognition of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but also a platform for discussing the impact of past conflicts on modern society. It opens up a dialogue on how current generations can address these issues. With the adop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we hope that inscribed sites will not only promote reconciliation and healing but also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addressing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Keywords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 difficult heritage, World Heritage, heritage interpretation, conflict management

Received 2024. 6. 11. | Revised 2024. 7. 18. | Accepted 2024. 8. 7.

